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539호

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

다. 발의일자 : 2024년 2월 2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2. 제안이유

- 신규 브랜드 제정 이후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홍보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, 현행 조례에는 홍보물품의 배부 대상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한 경품 배부만 가능한 실정임.
-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물품의 배부기준을 신설함 (안 제7조제3항).

나. 기타 문안 및 자구를 수정 또는 현행화함(안 제1조, 제8조제4항 및 제10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청탁금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신규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물품의 제공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홍보물품 배부 행위가 「공직선거법」 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, 이를 통해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홍보물품 배부 기준 신설(안 제7조제3항)

- 현행 제7조는 ‘상징물 관련 사업 등’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내용과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 부문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사업내용

중 ‘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’, ‘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’을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

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,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.

○ 다만,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,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별도 기준 없이 배부될 경우 정당한 홍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○ 이와 관련하여, 「공직선거법」은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‘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으로 실시되는 금품제공행위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홍보물품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「공직선거법」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직무상의 행위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
- 이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은 각 호로써 홍보물품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시책사업과 시 주최 행사 참여자 등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.
- 다만, 제3호는 “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”이라고 규정한바 해당 문안이 홍보물품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 - “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”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은 없으나,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(행정안전부령)은 별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.
 - 해당 규정을 유추하여 해석할 경우, 제3호 규정은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요구하는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, 이를 근거로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.

(2) 문안 및 자구 수정 등(안 제1조, 제8조제4항 및 제10조)

- 안 제1조는 잘못된 띄어쓰기, 안 제8조제4항은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, 안 제10조는 지난 일부개정에서 누락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있음.
- 법제처가 발간하는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은 반듯한 법령을

만들기 위해 <한글 맞춤법>, <표준어 규정> 및 <외래어 표기법>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각종 입안 시 본문의 내용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의안번호
1539

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이종환의원	2023. 2. 6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○ 신규 브랜드 제정 이후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홍보의 필요성은 증대 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홍보물품의 배부 대상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천 또는 심사를 통한 경품 배부만 가능한 실정 ○ 이에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 ※ 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(①・② 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.(신설) 1.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.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.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 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		
추진경과	○ 서울 상징물 조례 제정('98.3.10.) ○ 서울 도시브랜드 발표('23.8.16.) 및 관련 조례 개정('23.12.29.)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특이사항 없음		
대응방안	○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
향 후 계 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
담당부서	서울브랜드담당관	팀장	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(☎2133-6187)
		담당	행정6급 강이랑 (☎2133-6194)